시장시스템 운영 절차

1.0 목적

규칙 제8장의 규정에 의거 전력거래소의 입찰 및 계량시스템 등을 통칭하는 전력거래시스템과 정보공개시스템(이하 "시스템"이라 한다)의 운영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전력시장의 안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<개정 2009.12.31>

2.0 적용범위

- 2.1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기준
- 2.2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
- 2.3 기타, 재해로 인한 시스템 정지시 처리 절차

3.0 지침

3.1 법 및 동 시행령

4.0 책임

4.1 전력거래소 이사장

전력거래시스템과 정보공개시스템의 설치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반 설치계획의 수립은 물론 유지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스템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며, 실질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자를 임명한다.

- 4.2 발전회원
 - 전력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계량설비의 설치, 관리 및 통신회선의 임대, 유지보수와 관리 및 비용을 지불하고 계량설비 장애시 계량값의 수동입력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4.3 직접구매회원 전력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계량설비의 설치, 관리 및 통신회선의 임대, 유지보수와 관리 및 관련비용을 부담한다.
- 4.4 보안관리자 전력거래소 전체의 시스템 보안 및 인증과 암호화체제의 신설, 변경 및 수정 업무를 수행한다.
- 4.5 입찰부서 본 규칙에 의하여 발전회원의 입찰 여부 및 입력된 기술적 특성자료의검

증 등을 수행한다.

5.0 용어의 정의

- 5.1 보안 관리자 전력거래의 비밀 보호와 시스템 보안을 위해 거래소 직원 중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.
- 5.2 시스템운영부서 전력거래소에서 시스템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5.3 입찰부서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의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5.4 급전지시관리시스템 <개정 2012.12.31>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을 운용하는 부서가 발전회원에게 전력계통의 운용 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- 5.5 정보공개시스템 전력시장에 관한 전력거래, 계통운용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공개하는시스 템이며,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정보공개위원회에서 결정된 정보공개 항목을 회원에게 제공하는시 스템을 말한다. <개정 2006.9.14., 2012.12.31>
- 5.6 거래 데이터 회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및 본 규칙에서 정한 수요예측, 발전계획, 계통한계가격 등 전력거래 관련 데이터로서 정해진 시간 내에 데이터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5.7 <삭제 2009.12.31>
- 5.8 전처리장치(FEP: Front-End Processor) 발전 및 직접구매 회원의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설치하는 장치로서 동일 구역내 일정량의 전력량계에서 취득되는 계량데이터를 취합하여 전송하는 설비를 말한다.
- 5.9 계량값(Metered Value) 계량설비로부터 전력거래시스템으로 직접 원격 취득되는 값을 말한다.
- 5.10 현장값 발전 또는 직접구매 회원 구내 배전반에 설치된 Analog Meter가 지시하 는 값을 말한다.
- 5.11 접속계정관리자 회원이 자체 직원 중에서 선임한 자로서 전력거래소 시스템을 통하여 전 력거래 자료를 통하여 전력거래 자료를 입력, 변경, 조회하는데 사용하는 계정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9.12.31>

6.0 참고자료

6.1 시스템운영업무편람 <개정 2006.9.14>

7.0 절차

- 7.1 시스템 운영
- 7.1.1 기동 절차 및 방법은 "시스템 기동, 정지절차"(시스템운영업무편람)에 따른다.
- 7.1.2 시스템 가동시간은 일일 24시간 연속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.
- 7.1.3 전력거래소는 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장애 발생 또는 업무상 시스템 중지가 불가피할 경우, 사전에 정지계획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시스템을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. 단, 사안이 긴급하여 정지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원에게 통지하고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다.
- 7.1.4 전력거래소는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 규칙 관련 조항과의 비교 검증을 위하여 이를 기록하고 일정기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2.31>
- 7.1.5 전력거래소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스템 정보의 보존 및 손상된 데이터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보조기억 매체에 보존 작업을 수행한다.
- 7.1.6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장애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시스템 및 부대설비의 예방정비를 아래와 같이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9.14>
- 7.1.6.1 매일 : 설비별 일일점검, 통신상태 점검
- 7.1.6.2 매월 : 월간 예방점검 및 설비점검(UPS, 전원 등)
- 7.1.6.3 분기 : 전체 설비 안전점검
- 7.1.7 전력거래소는 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혹은 정보공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중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한다. <개정 2006.9.14>
- 7.2 시스템 점검 및 변경
- 7.2.1 시스템운영부서는 매일 11시에 입찰마감 상황을 점검한 후 미 입찰내역을 입찰부서로 통보하고, 입찰부서는 발전회원에게 확인하는 등 입찰에 대한 다중 점검(Cross Check)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28., 2022.6.30.>
- 7.2.2 시스템운영부서는 본 규칙에 정해진 시간 내에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시스템에 표시되는 지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7.2.3 시스템운영부서는 회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전력거래소 입찰부서의 문서화된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 입찰 마감시간을 사전 변경할 수 있다.

- 7.2.4 시스템운영부서는 본 규칙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거래데이터의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, 장애 발생시 즉각 조치하되, 미해결시 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공지하고 전력거래소내 관련 부서에 통지한다.
- 7.2.5 시스템운영부서는 계량자료의 원격취득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미취득시모템 및 전력량계의 상태를 점검한 후 통신회사의 통신통제부서와 발전회원의 협조를 통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, 발전 및 직접구매 회원은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- 7.2.6 7.2.5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량자료가 취득되지 않을 경우 전력거래소는 계량설비의 장애상황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회원은 거래일 익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7.3 전력설비 신·증설 등에 따른 조치
- 7.3.1 전력거래소는 회원의 전력설비 신·증설 등에 따른 프로그램 및 제반설비 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7.3.1.1 시스템운영부서는 시스템 접속계정 또는 전자인증 및 암호화 기능을 부여한다. <개정 2009.12.31>
- 7.3.1.2 입찰부서는 신규 발전기 및 발전기 정보 변경시 "발전설비정보등록시스템"을 이용하여 입력한다. <개정 2006.9.14>
- 7.3.1.3 <삭제 2009.12.31>
- 7.3.1.4 현장 계량설비 및 모뎀 등 통신회선과의 데이터 취득 온라인 시험을 실시 한다
- 7.3.2 발전 및 직접구매 회원은 계량설비를 위한 통신회선을 전력거래시스템의 통신 인출점(분선함)까지 제공, 유지관리하고, 전력거래소에도 모뎀을 공급, 설치한 후 통신시험을 실시하는 등 설치작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 - 단, 발전 및 직접구매 회원이 필요에 의해 현장에 전처리장치 설치시에는 전력거래소에도 전처리장치를 공급, 설치한 후 온라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2.31>
- 7.3.2.1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계량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.
- 7.3.2.2 계량설비 및 전처리장치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2.31>
- 7.3.2.3 계량을 위한 통신회선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2.31>
- 7.4 회원의 준수사항 <개정 2006.9.14>
- 7.4.1 발전 및 직접구매 회원은 전력설비 신·증설시 전력거래시스템과의 접속을 위한 제반 요구사항의 준수 등을 위한 전력거래소 직원의 현장 출입 및 작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 단, 준회원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에 의해 설치한다. <개정 2009.12.31>

- 7.4.2 <삭제 2009.12.31>
- 7.4.2.1 <삭제 2009.12.31>
- 7.4.2.2 <삭제 2009.12.31>
- 7.4.2.3 통신규약 : PPP (TCP/IP)
- 7.4.3 발전회원은 전력거래소 계량시스템의 신·증설 및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 정부의 "장기전원개발계획"을 토대로 익년도 계량설비 신·증설계획을 수립하고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7.4.4 발전 및 직접구매 회원은 통신비용의 절감을 위해 전처리장치를 부착할 경우, 전력거래소 계량시스템과의 통신접속 및 원활한 데이터 취득을 위해 설치 1개월 전까지 전처리장치 설계도면에 대하여 전력거래소와 기술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7.4.5 회원은 전력거래의 비밀 보호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회원에게 부여한 접속 계정(또는 인증번호)을 관리하는 사내 접속계정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전력거래소 보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접속계정관리자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.
- 7.4.5.1 회원의 접속계정관리자는 해당 회원의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을 진다.
- 7.4.5.2 회원의 접속계정관리자는 매 1개월 단위로 회원 사내 접속자의 비밀번호 가 변경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7.4.6 발전 및 직접구매 회원이 일반 전화회선 및 전용데이터회선을 이용하여 입찰시스템을 사용시 발생하는 데이터통신요금은 회원이 지불하여야 한다. [신설 2006.9.14.] <개정 2009.12.31>
- 7.5 시스템 장애시 조치
- 7.5.1 전력거래소는 지진,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통신회사의 공동구 화재 등 제 3자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면한다.
- 7.5.2 전력거래소는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전력시장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그 기록을 유지, 관리하여야 한다.
- 7.5.2.1 전력거래소는 초기정산 이전에 입찰데이터의 누락, 전력거래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 중단 등 하루전발전계획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하루전 발전계획의 재수립을 통해 초기 및 최종정산을 실시한다. <개정 2021.1.1.>
- 7.5.2.2 전력거래소는 초기정산 이후 입찰데이터의 누락 등 전력거래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제7장의 규정에 따른다.